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665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2. 조문의 구성체계	10
3. 주요 조문별 검토	12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2
나. 기본이념(안 제3조)	16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9
라.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	21
마. 추진체계 마련(안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27
바. 부칙	3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의원 등 16인

2. 발 의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고교학점제, 교육협동조합, 돌봄교육 등 미래교육과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이 지역과의 협력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음.

저출생·고령화, 인구절벽 등 지역소멸 위기 문제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창조성 넘치는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의 성장과 재생을 도모하는 새로운 엔진으로서 교육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음.

마을교육공동체는 배움의 공간을 기존의 학교에서 마을까지 넓혀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배움의 밀접한 연결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특히 분절과 경쟁 등 오늘날 교육이 지닌 문제 해결의 대안이자 미래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마을교육공동체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구성원의 이익과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의 구축,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시·도 교육감은 해당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5년마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마을교육공동체는 삶과 유리된 경쟁 위주의 공교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마을이 만나는 공동체 운영 사례들이 증가하고, 새로운 공교육 모델로서 혁신학교 운동이 확산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음¹⁾.
- 이는 그동안 교육의 주체를 학생·학부모·교사로만 바라보았던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나 기업,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음²⁾.
-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시·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마을교육공동체(시·도 혁신교육지구³⁾ 포함)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혁신교육지구 포함) 시·도별 조례 현황 >

구분	광역자치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조례 수)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19)

- 1) 이자형, “부산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실태 및 활성화 방안”, 「부산교육」 봄·여름 제350호(2020), p.24
- 2) 김용련, “지역사회 기반 교육공동체 구축 원리에 대한 탐색적 접근”, 「교육행정학연구」 제33권 제2호(2015), p.260
- 3) 혁신교육지구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사회, 단위학교 협력과 연계 강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통한 체계적 조직, 단위학교가 학교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이자 교육협력 사업으로 광범위한 지역교육공동체임(김소영, 구주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관계 연구”, 교육발전 제42집 제2호(2022), p328

구분	광역자치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 조례(조례 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2025.12.18. 상임위 의안심사 통과)	
부산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8)
대구	대구광역시 우리마을 교육나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8)
광주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
대전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5)
울산	울산광역시 마을교육공동체 및 서로나눔교육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5)
	울산광역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
경기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8)
	경기도 지역교육협력에 관한 기본조례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횡성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4)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온마을배움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1)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10)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9)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경남	-	남해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7)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

자료: 교육부

□ 이처럼 다수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마을교육

공동체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은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법률 제정 전인 현재에도 경남을 제외한 16개 시·도에는 광역단위의 마을교육공동체의 근거조례가 기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위한 263개의 지원기관(지원센터, 위원회, 협의체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 지역의 자율에 기반하여 기 추진 중인 사안이므로 신중검토 입장임.

[관계부처 의견]

(행안부) 지방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의무적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 필요

(대구) 법률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자체 사무로 판단되는 바,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자체로 수정하고 중앙정부 종합계획은 수립 실효성이 없어 삭제 필요

(경기) 해당 사무는 전국의 일률적인 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높아 법률 제정 필요성이 낮으며, 제정하더라도 종합계획 수립·기구 설치 의무화 등은 교육청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경남) 체계적인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 등 법령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행·재정적 지원 근거 조항 신설 필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의 업무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개정 필요

□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46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48억 700만원(연평균 29억 6,100만원)이상으로 추계하였는바⁴⁾,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안 제9조)	203	0	0	0	0	203	41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 (안 제14조)	2,377	2,377	2,377	2,377	2,377	11,885	2,377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19조)	2,020	0	233	233	233	2,719	544
합 계	4,600	2,377	2,610	2,610	2,610	14,807	2,961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현재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정법률안⁵⁾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바,

4) 추계서에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이 있음.

이들 제정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 “마을공동체”의 정의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마을공동체 관련 제정안 비교 >

구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목적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활동 기반 조성 등	▶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교육공동체 교육적 역량 강화,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의	▶ 주민등이 사회적·심리적 유대 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	▶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
기본 이념 (기본 원칙)	▶ 주민주도와 자발적 참여, 민주적 운영, 개방성,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 공익성	▶ 자발적 참여, 다양성 존중, 주민과 행정기관의 신뢰와 협력, 공동체 이익 기여, 지속가능하고 정치적·종교적 중립 교육생태계 구축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계획 수립(마을공동체) ⇒ 5년 주기 지역계획 수립(시군구), 5년 주기 지역계획수립(시도) ⇒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행안부)	▶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교육감, 시도지사와 협의) ⇒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교육부)
위원회	▶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시군구 및 시도) ⇒ 마을공동체중앙위원회(행안부)	▶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시도)

5)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551)

구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대표발의)
전담 부서	▶ 지원사업 총괄 조정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장)	▶ 업무 총괄(교육감)
지원 센터	▶ 마을공동체 중앙지원기관(행안 부) ⇒ 마을공동체 지역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장)	▶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교육 감)
기타	▶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전문인 력 양성(국가, 지방자치단체장),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행안 부), 마을공동체 기금 마련, 마을 공동체 재단 설립, 국유·공유재 산 활용, 자료제출 요구, 벌칙 적 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등	▶ 실태조사 실시(교육부장관, 시 도지사, 교육감) ▶ 협력체계 구축(교육부장관, 시 도지사, 교육감 - 지자체, 대학, 유관기관 및 단체) ▶ 협력센터 구축(교육지원청 - 시군구)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 조문의 구성체계

-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 하에 별도의 장 구분 없이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정의(안 제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종합계획 수립(안 제6조, 제7조),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구성(안 제10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조문의 구성체계]

본칙	
제1조 목적	제10조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제2조 정의	제11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제3조 기본이념	제12조 전담부서의 설치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3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칙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조 시행일
	제2조 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3.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1조는 동법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는 것으로,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제정안 제2조는 정의조항으로, “마을”을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정의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로 정의함.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 등이 교

제 정 안

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 중인 조례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2015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등 공교육 체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조성 및 활성화의 노력이 본격화되었으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⁶⁾.

- 특히, 마을교육공동체란 용어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마을공동체”와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교육혁신”의 분위기가 합쳐짐으로써 생긴 단어의 조합으로서,

6)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현황 및 개선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69호(2017. 3. 2), 국회입법조사처, p.1

“마을공동체”가 마을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 왔다면, 오늘날의 “교육혁신”은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한 학교교육의 보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을” + “교육” + “공동체”의 의미결합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음⁷⁾.

□ “마을”의 정의와 관련하여, 마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의 범위가 달라지며, 그에 따른 사업 및 지원 규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와 달리 법률에서 마을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관련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관련 입법례 비교 >

구분	입법례 등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협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전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마을"이란 대전광역시 관할 구역에서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주민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세종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

7) 김미향,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에 기반한 마을교육공동체의 개념 탐색”, 「평생학습사회」 제16권 제1호(2020. 2.28), p.28

구분	입법례 등
	이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와 마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교육생태계를 말한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등이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에 기반하여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주민등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추구하거나 지역사회 공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한편,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와 관련하여, 협력하고 연대하는 주체 중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미포함되어 있음.
- 끝으로, 정의규정은 일반적으로 목적규정(제1조) 또는 기본이념규정(제3조) 다음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⁸⁾, 제정안의 경우 정의규정이 기본이념규정(제3조) 앞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244

나. 기본이념(안 제3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3조는 기본이념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②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 ③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 ④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의 구축 노력, ⑤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육생태계 구축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조(기본이념) ①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특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③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④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마을교육공동체는 특정 정당의 이념이나 종교의 교리 등을 지지하지 않고 정치적·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2) 검토의견

- 기본원칙의 첫 번째 원칙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제정안의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살펴볼 때,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제정안의 입법 목적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
여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성
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관련 입법례 비교 >

구분	입법례
대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u>학생중심의 교육활동에 도 움이 되도록</u> 추진하여야 한다.
세종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① 세종마을교육공동체는(이하“마을교육공동체”라 한다)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u>학교 교육력 제 고</u> 를 지향한다. ②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 구성원 및 마을주민의 참여, 행정기관의 상호 신 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교육공 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u>학교와 마을의 교육력 제고</u> 를 지향할 것 2.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통한 마을 구성원의 주체적 참여를 기반으로 할 것 3.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 4. 민·관·학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5. 호혜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것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의원 대표발의)	제3조(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마을공동체는 이 법에 따라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 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민등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될 것 2. 모든 주민등에게 개방되어야 하고 다양성·독립성·책임성을 갖출 것 3. 모든 주민등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닐 것 4.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 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 5. 다른 마을공동체 및 유관 행정기관 등과 상호협력할 것

□ 한편, 기본이념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므로, 일반적으로 목적규정 다음에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⁹⁾, 제정안은 정의규정(제2조) 다음에 기본이념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9)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242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4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 제4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 ② 기본이념의 존중 및 실천, ③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 ④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이념을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 제4조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자체의 자율에 기반한 정책임을 고려할 때, 의무적으로 재정부담을 수반하도록 할 경우 지자체의 의지와 관계 없이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4항을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행정안전부 또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의무적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라.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교육감은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안 제6조),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안 제7조),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안 제8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 정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제 정 안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 현황과 여건 분석
2.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3.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변경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연도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10조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 정 안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검토의견

- ☐ 일반적으로 행정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입법례는 국가(중앙행정기관 등) 차원에서 “기본계획” 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기본계획을 기초로 교육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로 규정함으로써 행정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측면을 존중한 것으로 보임.

□ 제정안 제8조제1항은 실태조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기본계획 수립시 협의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¹⁰⁾

□ 한편, 제정안 제10조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는 시·도의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인바 「지방자치법」상 자문기관

10)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으로 보임¹¹⁾.

-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²⁾, 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하여 시·도에 설치된 자문기관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을교육공동체 지원기관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개수	20	13	75	3	1	2	2	6	1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개수	51	19	32	27	4	4	3	-	263

자료 : 교육부

경남을 제외한 16개 시·도 263개 기관 설치·운영 중(위원회 9개 시·도 98개소, 협의체 5개 시·도 80개소, 센터 11개 시·도 56개소 등)

- 교육부는 안 제6조제4항에서 교육감은 수립·변경된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지자체의 자율에 기반해야 하는바, 교육부장관에게 통보 의무 추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의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은 오히려

1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2)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책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¹³⁾.

13) 교육부는 안 제8조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체에 교육부장관을 추가하는 것 또한 신중 검토 입장임.

마. 추진체계 마련(안 제9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와 “전담부서”를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1조 및 제12조),

교육지원청은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부 칙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은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센터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 지원
2. 제8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연구·분석 및 평가
5. 지역사회의 인력·시설 등 인프라 발굴 및 활동 지원
6.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7. 마을교육공동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전담부서의 설치)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센터”를 두

거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협력센터”를 구축하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무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자치권(주민자치 및 교육자치)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등의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정안 제9조제1항은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발적 교육공동체를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교육자치를 실천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육부, 시·도지사 및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단체들과의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¹⁴⁾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 아울러, 제정안 제9조제2항에서는 교육지원청이 관할 구역의 시·군 및 자치구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와 교육자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4) 서용선,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받을 권리”, 「인권법평론」 제15호(2015년), p.46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마을”을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 지원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¹⁵⁾, 이와 같은 취지로 제정안은 “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학교·교육지원청과 마을·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15) 김미정, “제주와 타 시·도의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현황”, 「교육제주」, 2020 봄·여름 제177호, p. 40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교육기관과 지자체는 조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마을을 볼 수밖에 없다. 교육기관과 교사는 마을주민을 대상화하는 입장을 견지했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위한 예산만 내려보내면 된다는 생각이 초창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모습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간 지원 조직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센터의 조직 구성과 운영 주체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중간 조직으로서 학교·교육지원청과 마을·지자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바. 부칙

1) 제정안의 요지

- 안 부칙은 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제1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는 제정안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보며(제2조),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지원센터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제3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치된 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검토의견

- 부칙 제1조와 관련하여 기관의 설립 및 인력의 채용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바¹⁶⁾, 동 제정안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6)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821

- 부칙 제2조 및 제3조와 관련하여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마을교 육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그 중에는 위원회와 센터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과조 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